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67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모경종 · 김 윤 · 박정현  
권향엽 · 박지원 · 김영환  
이주희 · 이광희 · 이상식  
이건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및 보궐선거 등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라 한다)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이러한 한시 운영 체제로 인하여 선거 기간마다 심의위원을 매번 새로 위촉해야 되어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선방위 등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불공정 선거보도가 있더라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방위와 선심위를 상설 위원회로 두는 한편, 선방위 등의 위원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  
되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 교섭단체의 지위를 잃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후보자 및”을 “정당, 후보자 및”으로,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選舉放送의”를 “선거방송의”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을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규정된 選舉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 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본문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放送”을 “방송”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각 위원회의 설치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







자가 제1항에 규정된 選舉記事  
審議委員會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  
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  
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  
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등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등을  
발행하는 때에는 選舉記事審議  
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부를 지체없이 選舉記事審議委  
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第8條의4(選舉報道에 대한 反論  
報道請求) ① 선거방송심의위  
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가 설치된 때부터 選舉日까지  
放送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公  
表된 人身攻撃, 정책의 歪曲宣  
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政黨  
(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  
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  
送 또는 記事掲載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이내에 書面으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  
한 법률」 -----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8條의4(選舉報道에 대한 反論  
報道請求) ① 방송-----

당해 放送을 한 放送社에 反論  
報道의 放送을, 당해 記事를 게  
재한 言論社에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각각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放送 또는 記事掲載가  
있는 날부터 30日이 경과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